

# 大學 奨學金制度의 문제점과 改善案

金 井 厚

(江原大 法學科)

## 1. 奨學金 支給 현황

전국적으로 대학생의 몇 %가 매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고, 1人當 年平均支給額은 얼마나 되는가? 韓國學術振興財團에서 출판한 「全國大學獎學金支給實態調查書」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의 약 35%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고, 1人當 年平均支給額은 약 4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각급 대학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전문대학은 25~26%, 교육대학은 28~29%, 대학(교)은 38~39%, 대학원은 47~48%에 달하고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같은 종류의 대학에 있어서도 지역과 國公立 및 私立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統計上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장학금을 財源에 따라 2大別하면 大學 자체에서 學費를 減免해 주거나 學校財團에서 지급하는 校內獎學金과 문교부에 등록된 205개의 奨學法人을 위시하여 校外獎學財團에서 지급하는 校外獎學金으로 구별되는 바, 장학금 총액에 있어서나 수혜학생수에 있어서 대략 校內獎學金이 90% 이상, 校外獎學金이 10% 가까이에 달하고 있어서 교내장학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약 100만의 대학생 중 35만 명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고 장학금 총액이 1,400억 원에 달하여 교외 장학금만도 130억 원에 이

른 것은 수혜비율로 보나 장학금액으로 보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장학금 수혜비율과 금액이 데폭 증가한 것은 1980년 대초의 일로서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졸업정원제의 채택으로 대학마다 졸업정원의 130%까지 입학을 허용하면서 그 초과 모집한 만큼의 등록금 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免除獎學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둘째 중·고등학생 과외금지 조치로 대학생들이 부업으로 가정교사를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각종 장학금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獎學金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校內獎學金도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學費減免獎學金 :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내장학금으로서 교내장학금의 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록금 전액 면제와 수업료 면제, 기성회비 면제로 나누어진다.

② 勤勞獎學金 : 대학내에서 학생이 일정시간 동안 대학의 행정이나 실험 등 봉사활동을 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月別로 一定額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체 교내장학금 중에서 대학에 따라 5~7% 정도 지급된다.

③ 援護獎學金 : 국가 유공자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훈장학금으로서 등록금 전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전국적으로 一萬여 명의 대학생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④ 教職員子女獎學金： 전국 대학의 비다수가 자기 대학 교직원의 직계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⑤ 體育特技者獎學金： 체육진흥정책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어 입학하고 학교 대표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一律的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통계에 나타난 전국 특기자의 수는 매년 천 명 내지 천 오백 명에 달하며 장학금의 액수도 등록금의 일부로부터 생활비, 훈련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

⑥ 學生幹部功勞獎學金： 과거 학도호국단의 간부학생, 대학신문 또는 대학방송국에 근무하는 학생 등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다.

⑦ 成績優秀獎學金： 우등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따라 다양하며 등록금을 면제함과 동시에 매월 학비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⑧ 貸與獎學金：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無利子 또는低利로 대여해 주고 졸업 후 취업한 후에 分割償還토록 하는 장학금으로서 근래 각 대학은 학비감면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대여장학금으로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상환한 금액은 교내 장학재단의 재원이 되어 더욱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⑨ 助教獎學金：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 이외에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⑩ 學校財團獎學金：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학교법인 또는 대학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교내 장학금의 12~13%를 차지하고 있다.

校外獎學金에 대해서는 장학법인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뒤에 언급하기로 한다.

## 2. 奨學生選拔의 절차와 기준

대학에서 장학금을 총괄하는 기관은 學生處

(課) 奖學室이며 각 대학마다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장학 방침과 장학생의 최종 선발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각 학과의 分擔指導教授가 선발하여 학장이 추천하면 校·處長으로 구성되는 大學(校) 奖學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장학생의 선발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학과별 분담지도교수이다.

獎學生의 選拔基準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① 가계가 곤란한 학생 ② 성적이 우수한 학생 ③ 교내·외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의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장학제도의 목적이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있으므로 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휴학생 및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農村指導者育成獎學生, 總務處獎學生 등 졸업 후 특정 분야에서 근무할 장학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대학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

校外獎學金의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의 취지만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선정은 대학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장학재단에 따라서는 재단 스스로 선임하거나 복수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을 재단에서 하기도 한다.

## 3. 校外 奖學法人 현황

全國獎學財團法人的 現況을 보면 먼저 財團法人的 형태로 된 것이 197개로 압도적이며, 社團法人도 8개로 함께 205개의 法人이 있으며 市·道別로는 128개의 서울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法人設立者別로 분석하면 企業體가 설립한 장학법인이 59개로 29%, 자수성가한 築志家가 설립한 것이 94개로 46%, 同窓會가 설립한 법인이 19개로 9%, 宗親, 門中이 설립한 법인이 6개로 3%, 기타 機關이나 團體에 부설된 것이 27개로 13%이다.

基金規模別로 볼 때는 基金 10억 원 이상의 法人으로 전국에 걸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은 產學協同財團, 三美文化財團, 三·一文化財團, 서울大學校 奨學會, 世林文化財團, 養英會, 蓮庵文化財團, 陸英修女史 追慕事業會, 正修獎學會, 製鐵獎學會, 韓國高等教育財團, 韓國勞動組合 總聯盟獎學會, 韓國石炭獎學會, 韓國指導者 育成獎學財團, 玄松文化財團, 金玉學術文化財團, 錦下獎學會, 東萊善英會 등 17개로 전체의 약 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27개로 약 1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73개로 약 35%, 1억 원 미만의 영세한法人이 88개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獎學法人的 약 반수가 社團法人 韓國獎學法人協議會의 회원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반수는 비회원법인으로 되어 있다. 한국장학법인협의회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학제도의 연구 개선, 장학기금 확충의 촉진과 지원, 기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설립되었다.

校外獎學金의 總支給額은 130억 원에 이르며 年平均 1人當 지급액은 54만여 원에 달한다. 學校別로는 교육대학이 22만원, 전문대학이 26만원, 대학(교)이 58만여 원, 대학원이 77만 원 등이다.

#### 4. 奖學金에 관련된 問題들

大學獎學金의 규모와 수혜율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앞서 지적하였지만 장학기금의 조성과 장학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免除獎學金의 比重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근래 각 대학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을 확대해 가고 있고 校外獎學財團도 그 수에 있어서나 基金의 確保라는 면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극히 영세하여 등록금 재원의 면제장학금의 10%에도 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되고 이는 일반 학생들이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

급한다는 것은 장학제도의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누구나 졸업정원제의 완화로 130%까지 입학을 허용하던 것이 대체로 110%선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학금 재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장학금 수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밖에 없으며 총 등록금 재원의 20% 또는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라는 문교부의 지시가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大學自律化政策에 맞는 것인가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奖學金의 支給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0년대초에 장학금이 대폭 확대된 것은 과외금지 조치로 대학생들이 가정교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고려한 것인 바, 과연 이 정도의 장학금 확대로 가정이 빈곤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가정교사제도의 재허용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며, 각 대학에서 과연 가정이 빈곤한 자에게 장학금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가도 문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력고사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또는 우수한 체육특기자를 유치하고 체육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많은 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정이 빈곤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奖學金은 등록금 재원에서 지급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등록금 재원의 면제장학금의 수혜자가 많아짐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자세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特定 奖學財團에서 일정한 장학의 취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할 때의 궁지 내지 감사의 마음 또는 同一獎學生간의 선후배간, 동료간의 유대감, 졸업 후 보답하는 마음자세 등을 찾기 어렵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됐거나 학생기구의 간부가 되었거나, 가정이 빈곤하면 으레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장학금 수혜자의 수만 증가하고 액수는 적어져서 登錄金을 多數에게 還給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근래 다수의 대학에서는 소

수자에게 최소한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여하고 나머지를 대여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졸업 후에 갚도록 하고 그 환수금액을 장학기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 5. 奨學制度 改善을 위한 몇 가지 提言

大學獎學制度의 定着과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등록금 체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奖學基金이 大學의 奖學財團 또는 校外獎學法人의 基金이 주류를 이루도록 전환되어야 하므로 영세한 대학 장학재단이나 교외 장학법인의 기금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大企業은 그 소득을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나 매년 수많은 대학 졸업생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고도의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명색뿐이 아닌 대규모 研究獎學基金을 조성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측에서도 이러한 기금 조성에 세계의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우에 대규모 장학기금은 그 나라 大企業에서 出捐한 것이며 이는 또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人材를 大學에서부터 육성하여 充員시킨다는人事管理的 측면에서도 큰 뜻이 있는 것이다.

大企業과 더불어 거대한 장학기금을 조성할 機關은 國庫, 大學 및 政黨이다. 國家는 國立大學의 운영과 수업료 면제, 그리고 근래 시행하고 있는 國庫學資金 응자의 이자 부담 등으로 大學獎學에 참여하고 있는 바 私立大學을 포함하여 항구적인 大學獎學財團의 形成에 획기적인 出捐을 함으로써 大學이 여타의 시설 기준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모의 研究獎學基金을 설정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奖學制度를 定着시켜야 할 것

이다. 나아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장학금, 축산장학금, 석탄장학금 등 地域別 산업계층별 소득격차를 감안하고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研究, 產業分野를 위한 特別獎學基金을 대폭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와 같이 國家, 企業, 大學과 더불어 政黨도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奖學事業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학생운동이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 장학사업을 구실로 학생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政黨이 장학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大學生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政策을 입안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풀여 간다는, 그리고 장래의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政黨이 大學獎學事業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기성정치인과 대학생들간의 바람직한 대화와 연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행 대학 장학제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학부 위주로 되어 있는 장학제도를 대학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연구업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특히 우수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서도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研究獎學金의 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奖學生의 事後管理와 관련하여 奖學生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학업이나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事後措置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연구, 실험 등에 장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취업시에도 장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